

##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변경사항

1.펀드명 :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2.정정사유

1)규약

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2)투자설명서

①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②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
③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(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 반영 등) - 해당사항없음

3)간이투자설명서

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
3.변경내용

<규약>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
	<p>1.(기재생략)</p> <p>2.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주식관련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-이상인 것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~10.(기재생략)</p> <p>②(기재생략)</p>	<p>1.(현행과 동일)</p> <p>2.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주식관련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<b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b>」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-이상인 것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~10.(현행과 동일)</p> <p>②(현행과 동일)</p>
		<p>부칙</p> <p>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투자설명서>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최근현황 업데이트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<b>최근현황 업데이트</b>

운용전문인력	최근현황 업데이트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신설	-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X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변경사항 추가	추가	2021.08.31 ①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(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 반영 등) -해당사항없음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 업데이트	가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대상 ②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 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주식관련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 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	가. 투자대상 ②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주식관련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 이 A- 이상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 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

		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-이상인 것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	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-이상인 것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최근현황 업데이트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의 최근3년 변동성 최근 3년 변동성: 3.27%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의 최근3년 변동성 <b>최근 3년 변동성: 4.08%</b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 업데이트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최근현황 업데이트</b>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최근현황 업데이트	가. 요약재무정보 나. 대차대조표 다. 손익계산서	가. 요약재무정보 <b>최근현황 업데이트</b> 나. 대차대조표 <b>최근현황 업데이트</b> 다. 손익계산서 <b>최근현황 업데이트</b>
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최근현황 업데이트	-	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최근현황 업데이트	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기준)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(세전기준)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기준)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(세전 기준)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

**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**
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 업데이트	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가. 회사개요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 라. 운용자산규모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	--

**<간이투자설명서>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<b>간이투자설명서</b>			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현황 업데이트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
운용전문인력	최근현황 업데이트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<a href="#">최근현황 업데이트</a>